

제 1492 호
1990. 5. 25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고 건수
편집인: 공보관 유천수
전화: 731-8111~3
주소: 서울특별시 종합청사
전화: 735-3337

시 보

차 례

- ◎ 공문시행
 - 물품관리권한소요조치 3
- ◎ 고 시
 - 제141호 도시계획사업(고속철도:부대시설)시행허가 4
 - 제149호 차선에따른통행차량의기준에대한고시 4
- ◎ 공 고
 - 제306호 서울특별시청소년지원기금회계직공무원지정공고 5
 - 제312호 도시계획사업(수도)실시계획인가에따른서류공람및의견청취공고 6

〈이런계속〉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313호 마포로제2구역제2지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을위한공람공고 8

● 구 고 시

제 12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양천) 8

제 14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양천) 8

제 29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평) 9

제 39 호 민영주택건설사업변경승인(동작) 9

제 41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구로) 9

제 42 호 도시계획건설(학교)변경지적승인(구로) 10

● 구 공 고

제 21 호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실시계획공람공고(강서) 10

제 38 호 동장직인및개인개각공고(동대문) 10

제 40 호 주택자계생산업등록취소공고(동대문) 11

제218호 주택자계생산업등록취소공고(도봉) 11

● 사 령

공 문 시 행

관인생략
서울특별시

공원30114-371

(773-3762)

1990. 5. 24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물품관리전환 조희

1. 우리시 공원과의 '90정기재물조사 결과 발생한 불용품에 대하여 서울시 물품관리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전환 소요조희 하오니 희망부서에서는 '90. 5. 31한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내에 요청이 없을 시는 해당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겠습니다.

가. 관리전환 소요 조희품 내역

연번	물품분류번호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상 태	취득일시	취득가격
1	4140-40	선 통 기	금 성 14"	대	1	요정비	84. 7. 10	19,000
2	6760-078	렌즈(미놀타)	F = 28%	개	1	불 량	84. 4. 11	100,000
3	7105-013	응 접 셋 트	3 인 용	조	1	"	84. 2. 16	90,000
4	7430-001	한·영타자기	GTs 8400	대	1	요정비	84. 2. 16	506,000

끝.

서울특별시
(공원과장 전결)

수신처 산하전기관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141호

도시계획사업(고속철도: 부대시설)
시 행 령 기

1. 서울특별시고시제276호(81.7.25)로 시설
설정 및 지적승인되고 동고시제55호(82.2.6)
로 사업시행허가된 지하철 4호선 창동차량
기지내의 전동차 검수고 증설공사에 대하
여 도시계획법 제24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허가
하고 동법 제2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를 고시합니다.

1990. 5.

서울특별시

가. 사업시행지: 지하철 4호선 창동차량기
지내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종류: 지하철 4호선 건설사업
- 명 칭: 지하철 4호선 창동차량
기기 검수고 증설사업

다. 사업시행규모

- 건축면적: 6,852㎡

- 연 면 적: 7,676㎡
- 라.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47-7
-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 한진희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년월일
- 착수년월일: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
- 준공예정년월일: 1990. 12. 31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외 소재지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지하철
공사 부지내 사업으로 해당 없음
- 사.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대표전화 582-892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고시제149호

차선에따른통행차량의기준에관한고시

도로교통법 제13조 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별표8)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로중
면도 5차선 이상의 도로에서 자동차(중기포
합)의 차선에 따른 통행차량의 기준을 다음
과 같이 지정 고시한다.

1990. 6. 1

서울특별시

면도 5차선이상 도로 차선에 따른 통행차량의 기준

도 로	차 선 구 분	통 행 할 수 있 는 차 종 별
고속도로 외의 도로	5차선	1 차 선 승용 자동차
	차 선	2 차 선 승용 자동차
		3 차 선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4 차 선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중기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5 차 선 이륜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자전거, 우마차, 그밖의 중기	
면도	1 차 선 승용 자동차	
	6 차 선	2 차 선 승용 자동차
		3 차 선 승용 자동차

도 로	차 선 구분	통행할 수 있는 차종별
고속도로	4 차 선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5 차 선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중기,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6 차 선	이륜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자전거, 우마차, 그밖의 중기
로외의도로	1 차 선	승용 자동차
	2 차 선	승용 자동차
	3 차 선	승용 자동차
	4 차 선	승용 자동차
	5 차 선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6 차 선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중기,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7 차 선 이상	이륜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자전거, 우마차, 그밖의 중기

부 칙
이 고시는 199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306호

서울특별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회계직공무원 지정공고
서울특별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

리조례(87.12.31 서울특별시조례제2234호)에
의거 서울특별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회계
직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1990. 5.

서울특별시장

- 회계직 공무원 지정내용
 - 가. 서울특별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출납
명령관 : 서울특별시 가정복지국장
 - 나. 서울특별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출납
공무원 : 서울특별시 청소년과장

직 인 등 록 조 서

회 계 명 : 서울특별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관서명(청소) : 서울특별시 가정복지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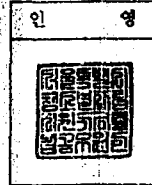
직 명 : 서울특별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출납명령관

사용개시일 : 1990년 5월 일



직 인 등 록 조 서

회 계 명 : 서울특별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관서명(청소) : 서울특별시 가정복지국 청소년과
 직 명 : 서울특별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출납공무원
 사용개시일 : 1990년 5월 일



●서울특별시공고제312호

도시계획사업(수도)실시계획인가에따른
 서류공람및의견청취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제548호('86. 8. 1)로 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 및 동 고시 제645호('88. 8. 1)로 지적 승인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의동 산 17번지 일대에 도시계획사업(수도)을 시행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생산관리부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5. 25
 서울특별시

- 가.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의동 산17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수도), 아차산 배수저 건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64,363㎡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청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 1994년 12월 31일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 권리 명세 : 별첨
 사.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명서 : 별첨
 아.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자. 기타사항 :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생산관리부 (362-3816)로 문의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

순 위	소 계 지	지 지 적 목 (㎡)	권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1	성동구 구의동 산10-11	임	3,015.0	3,015.0		서울특별시
2	" 산13-4	임	2,955.0	2,955.0		서울특별시
3	" 산17-1	임	12,793.0	12,793.0	뉴욕주 워싱턴시 옥스포드 보이유트 61	주 정 남
4	" 산17-2	임	1,693.0	1,693.0	충청남도 홍성군 홍주동 자곡 35-28	김 두 실 이 계 화

순 위	소 재 지	지 목	지 적 (㎡)	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5	성동구 구의동 산17-8	임	840.0	840.0	종로구 효재동 15-1 중구 동자동 35-28	김 두 실 이 재 화	
6	" 산17-11	임	397.0	177.0	"	"	
7	" 산30-2	임	2,446.0	2,446.0	종로구 명륜동2가 86-20	유 창 준	
8	" 산30-3	임	3,296.0	3,296.0	"	"	
9	" 산30-4	임	7,035.0	7,035.0	중구 필동3가 28-6	오 변 석	
10	" 산31-2	임	4,307.0	4,307.0	종로구 명륜동 86-20	유 창 준	
11	" 산35-1	임	7,114.0	7,114.0	중구 필동3가 62-8	오 청 화	
12	" 산35-3	임	116.0	116.0	성동구 구의동 205-4	김 호 송	
13	" 산35-4	임	1,828.0	1,828.0	중구 동자동 35-28	이 재 화	
14	" 산35-5	임	354.0	354.0	중구 필동3가 62-8	오 청 화	
15	" 산35-6	임	1,739.0	1,739.0	중구 동자동 35-28	이 재 화	
16	" 147-4	전	876.0	53.0	중구 다동 10-3	윤 봉 연	
17	성동구 광장동 산74-33	임	10.0	10.0		국 유 지	
18	" 산79-1	임	7,696.0	7,696.0	마포구 아현동 453	김 재 용	
19	" 산79-9	임	13.0	13.0		서 특 울 시	
20	" 산79-11	임	78.0	78.0		서 특 울 시	
21	" 산80-1	임	6,426.0	6,426.0	마포구 아현동 453	김 재 용	
22	" 380-3	답	96.0	96.0	종로구 가회동 1-13	김 성 협	
23	" 381-38	답	171.0	171.0	종로구 가회동 1-13	김 성 협	
24	" 383-3	전	413.0	202.0	"	"	

●서울특별시공고제313호

마포로 제2구역 제2지구 재개발사업
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345호('79. 9. 21)로 재개발구역 지정되어 서울시 고시 제939호('87. 12. 28)로 사업시행인가된 마포로 제2구역 제2지구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 변경인가를 위하여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시 주택국 재개발과에 비치하며 시행구역내의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990. 5. 25

서울특별시

- 가. 사업의 명칭: 마포로 제2구역 제2지구 재개발사업
- 나. 시행구역: 마포구 공덕동 380-1의 13필지
- 다. 시행면적: 2,650㎡
- 라. 사업시행자: 마포구 공덕동 369-12 양법석
마포구 공덕동 298-16 김건작

마. 공람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시행기간	87.12.28-90.6.28	87.12.28-93.7.28

마. 공람기간: 1990. 5. 25 - 1990. 6. 24

공 고 시

●양천구고시제12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 동법시행령 제32조의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0. 5.

양천구청장
다 음

1. 사업명: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2. 사업주체: 여운재건축 주택조합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규모
○위 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764-4
○면 적: 2,173.80㎡
○규 모: 아파트 5층 1동 40세대
4. 사업시행기간: '90. 5 - '90. 10

●양천구고시제14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 동법시행령 제32조의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0. 5. 23

양천구청장

다 음

1. 사업명: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2. 사업주체: 교통안전진흥공단 직장주택조합의 7
3. 사업시행자의 위치, 면적, 규모
○위 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29-1의 2필지
○면 적: 9,804.76㎡
○규 모: 아파트 10-15층 3동 251세대
4. 사업시행기간: '90. 5. - '91. 12

●은평구고시제29호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0. 5.

은 평 구 청 장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 사업
2. 사업주체 : 한국주택은행 직원주택조합
한국증권금융 직원주택조합 서강건설 (주)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규모
가. 위치 : 은평구녹원동 65-1의 11필지
나. 대지면적 : 11,964㎡
다. 건축연면적 : 35,423.25㎡
라. 규 모 : 아파트 7-15층 3동 306세대
4. 사업기간 : 1990 - 1991. 12. 31

●동작구고시제39호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 변경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변경 승인신청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5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0. 5. 22

동 작 구 청 장

1. 사업명 : 민영주택 건설사업
2. 사업주체 : 한국 보훈 복지공단 직장주택조합 외2개 직장 주택조합
대표 임 회 택의 2인
3. 사업시행지 및 면적규모
가.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산 25-2의 8필지
나. 면적 및 규모

주택종별	구 모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층	동	세대			
아파트	11-15	1	801	4,364	671.35	8,627.91

다. 변경사항

- 1) 세대당 평면계획 변경
27평형(9세대) } 76세대→25평형 81세대
25평형(67세대)
- 2) 층수변경
9-15층 → 11-15층

●구로구고시제41호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민영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0. 5. 17

구 로 구 청 장

- 다 음 -
1. 사업명 : 민영주택 건설사업
 2. 사업주체 : 관세청, 남부경찰서, 국회사무처
직장주택 조합 대표 김 용 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가. 위치 : 구로구 시흥동 산112-5호외
3필지
나. 대지면적 : 6,432.69 평방미터
다. 건축연면적 : 18,318.74평방미터
라. 규 모 : 아파트 5-17층 1동 163세대(전용면적 85㎡이하)
 4. 사업시행기간 : '90. 5 - '92. 1

◎구로구고시제42호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제67호('90. 3. 14) 및 같은고시 제87호('90. 3. 27)로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지적승인 조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규모(㎡)	비 고
기 정	학 교	구로구 신도림동 314-9 일대	14,957	신도림중점립 (중11㎡)
변 경	"	"	14,968	
기 정	"	구로구 고척동 76-193 일대	10,280	고산국교 설립예정지
변 경	"	"	10,367	(중 87㎡)
기 정	"	구로구 구로동 685-161 일대	13,661	구일중학교 설립예정지
변 경	"	"	13,580	(감 81㎡)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하였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5. 22

구 로 구 청 장

나.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구 공 고

◎강서구공고제21호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실시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제203호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12호로 시설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지적 승인된 영창근린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허가 에 따른 서류공람 및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도시계획법 제2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2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에게 공람합니다.

2. 토지(건물) 조서 및 도면은 강서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동사업에 따른 의견을 공람 기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 5. 22

강 서 구 청 장

1.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창동 산 24-1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시행

3. 사업의 명칭 : 영창근린공원 조성

4.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총 면적 : 98,000 ㎡
- 1차 시행 : 42,002 ㎡
- 차후시행 : 55,998 ㎡

5. 사업 시행자 : 경기도 고양군 원당읍 식사2리 경 세 진

6. 사업기간 : 1990. 6. 1 - 1992. 5. 30

- 1차 : '90. 6. 1 - '90. 12. 31
- 2차 : '90. 1. 1 - '92. 5. 30

7. 시설조서 : 별 첨

8. 도로조서 : "

◎동대문구공고제38호

관 인 개 각 공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하 담실리제2동 및 휘경제1동의 동장 관인, 계인을 개각 사용 승인하였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인규칙 제8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1990. 5. 18

동 대 문 구 청 장

1. 판인명: 담심리제2동 및 휘경제1동의 동장 관인, 개인		2. 관인사용개시일: 1990. 6. 1		3. 인 영		
신 규						
인 영						
공인명	담심리제2동장인및계인 (민원사무전용)		휘경제1동장인	휘경제1동장인및계인 (민원사무전용)		
폐 기						
인 영						
공인명	담심리제2동장인및계인 (민원사무전용)		휘경제1동장인	휘경제1동장인및계인 (민원사무전용)		
<p>●동대문구공고제40호</p> <p>주택자재 생산업 등록 취소 공고</p> <p>주택건설 촉진법 제41조 2 및 같은법 시</p>			<p>행령 제40조에 의거 아래 주택자재 생산업소에 대하여 등록취소 하였고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0. 5</p> <p style="text-align: right;">동 대 문 구 청 장</p>			
등록번호	품 목	상 호	대표자	주 소	등록취소일자	등록취소사유
5-1	시멘트 벽돌 시멘트 기와	논산건재	김상수	담심리동 268-1	'90. 5. 19	자진폐업
<p>●도봉구공고제218호</p> <p>주택자재 생산업 등록취소</p> <p>다음 주택자재 생산업소는 무단 폐업하여 주택건설 촉진법 제41조의2 규정에 의거 주</p>			<p>택 자재 생산업을 등록 취소하고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0. 5. 21</p> <p style="text-align: right;">도 봉 구 청 장</p>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소 제 지	등록품목	사 유	
7-247	상진건재	전옥경	창동 450	기 와	무단폐업	
7-14	삼경건재	백와룡	창동 166-2	벽 돌	"	
7-230	우석건재	기세오	창동 166-4	기 와	"	

◎1990년 5월 23일자		5급 공무원 진보		령 제196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재현	감사1담당관 감사총괄계장	감사 1 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이삼봉	감사1담당관 감사1계장	주택기획과	"	
목영단	행정과 지도계장	행정과	"	
이주영	행정과 행정관리계장	연료과	"	
장정우	시민과 민원1계장	행정과	"	
장무용	상공과 상정계장	시민과	"	
추진갑	주택기획과 주택계획계장	주택개발과	"	
최승렬	주택개발과 단속계장	서대문구	"	

◎1990년 5월 24일자		5급 기술직공무원 진보		령 제197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유정영	기술심사담당관 건축심사계장	송파구	지방건축기과	
박용성	송파구	세종문화회관	"	
유훈	세종문화회관 관리계장	내무국	"	

◎1990년 5월 25일자		6급이하 기술직공무원 파견		령 제198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유기운	지하철건설본부 파견 ('90.5.25-별도지시시까지)	재개발과	지방토목기사	
황인기	"	중량구	"	
이영우	"	강남구	"	
장남구	"	양천구	"	
고철산	"	남부건설사업소	"	
원용만	"	도시계획과	지방토목기사보	
노경희	"	시설계획과	"	
한동근	"	용산구	"	
이종구	"	서초구	"	
김영훈	"	성북구	"	
최진선	"	도봉구	"	
주부기	"	은평구	"	

성 명	발 행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강 영 진	지하철건설본부 파견 ('90.5.25-별도지시시까지)	서 대 문 구	지방토목기사보
신 성 균	"	건설자재시업소	"
전 의 범	"	구 로 구	"
남 정 윤	"	도시개발과	"
김 배 식	"	노 원 구	"
권 지 근	"	송 파 구	"
송 철 호	"	서부건설사업소	"
임 규 삼	"	강 서 구	"
이 구 선	"	마 포 구	지방토목기원
최 도 영	"	강 동 구	"
박 창 수	"	동 대 문 구	지방토목기원보
허 경 호	"	은 평 구	지방전기기사
태 광 식	"	진 축 지 도 파	지방전기기사보
이 해 망	"	양 천 구	"
오 해 원	"	용 산 구	지방기계기사보
김 금 철	"	난지하수처리장	"

◎1990년 5월 25일자 7급이하 기술직공무원 전보 령 제199호

성 명	발 행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김 인 곤	종합건설본부	중 랑 구	지방토목기사보
이 수 격	관 악 구	"	지방보건기원보
최 병 규	중 랑 구	관 악 구	"
유 춘 기	종합건설본부	영 등 포 구	지방건축기사보

지방별정직 8급 상당공무원 면직 령 제200호

성 명	발 행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김 기 선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노원부너북지관	지방별정직8급상당

공무국의 여행 변경 통보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소 속	탄천하수처리장	과 등
직 · 성 명	지방기계과, 한복연	"
여 행 국	싱가폴, 홍콩, 대만, 일본	과 등
여 행 기간	'90.5.21-5.30(10일간)	'90.6.17-6.26(10일간)
여 행 목적	외국하수처리장 견학	과 등

서 울 북 별 시 장

상수도 사업본부 사령

©1990년 5월 14일자

6급이하 지방기업 행정직 면직

명 제58호

인번	성명	계	현 직	
			부서	직급
1	이 미 숙 (李美淑) 630928- 2017810	원예외하여 그 직을 면함.	강남수도사업소	지방기업행정서기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